

#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6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4.  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## 1. 개정이유

행정여건 변화로 업무필요성이 감소되는 운전분야(기능직)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 정원을 늘려 현안사업 추진 및 인력운용에 효율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○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(별표 3)

- 일반직 정원 조정 : 454 → 457 (증 3)
- 기능직 정원 조정 : 90 → 87 (감 3)

### ○ 조정내역

- 기능직(감 3) : 운전원 2(9급 1, 10급 1), 조무 1(10급)
- 일반직(증 3) : 계약직 3 ↳ 총 무 과 : 라급 1명(기록물관리)
  - ↳ 문화체육과 : 라급 1명(학예사)
  - ↳ 도 시 과 : 다급 1명(재개발업무)

## 3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##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 : 입법예고 의견 없음(2010. 3. 15 ~ 4. 4)

##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으로 초과되는 기능10급(조무) 1명은 2010. 6. 30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##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

직급별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동
총 계	547	377	16	38	116
정무직계	1	1			
구청장	1	1			
일반직계	457				
3급	1	1			
4급	5	3	1	1	
5급	37	19	2	3	13
6급 이하 계	414				
별정직계	2				
6급상당 이하 계	2				
기능직계	87				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<b>[별표 3]</b> <b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</b> (제4조 관련)			<b>[별표 3]</b> <b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</b> (제4조 관련)		
<b>기관별 직급별</b>	<b>총계</b>	<b>본청</b>	<b>의회 사무국</b>	<b>직속 기관</b>	<b>동</b>
<b>총 계</b>	<b>547</b>	<b>377</b>	<b>16</b>	<b>38</b>	<b>116</b>
<b>정무직계</b>	<b>1</b>	<b>1</b>			
<b>구청장</b>	<b>1</b>	<b>1</b>			
<b>일반직계</b>	<b><u>454</u></b>				
<b>3급</b>	<b>1</b>	<b>1</b>			
<b>4급</b>	<b>5</b>	<b>3</b>	<b>1</b>	<b>1</b>	
<b>5급</b>	<b>37</b>	<b>19</b>	<b>2</b>	<b>3</b>	<b>13</b>
<b>6급 이하 계</b>	<b><u>411</u></b>				
<b>별정직계</b>	<b>2</b>				
<b>6급상당 이하 계</b>	<b>2</b>				
<b>기능직계</b>	<b><u>90</u></b>				
<b>기관별 직급별</b>	<b>총계</b>	<b>본청</b>	<b>의회 사무국</b>	<b>직속 기관</b>	<b>동</b>
<b>총 계</b>	<b>547</b>	<b>377</b>	<b>16</b>	<b>38</b>	<b>116</b>
<b>정무직계</b>	<b>1</b>	<b>1</b>			
<b>구청장</b>	<b>1</b>	<b>1</b>			
<b>일반직계</b>	<b><u>457</u></b>				
<b>3급</b>	<b>1</b>	<b>1</b>			
<b>4급</b>	<b>5</b>	<b>3</b>	<b>1</b>	<b>1</b>	
<b>5급</b>	<b>37</b>	<b>19</b>	<b>2</b>	<b>3</b>	<b>13</b>
<b>6급 이하 계</b>	<b><u>414</u></b>				
<b>별정직계</b>	<b>2</b>				
<b>6급상당 이하 계</b>	<b>2</b>				
<b>기능직계</b>	<b><u>87</u></b>				

# 의안심사보고서

## (의안번호 760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0. 4. 7(수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0. 4. 8(목)
- 라. 위원회 상정 : 2010. 4. 19(월)

###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최일식)

- 행정 여건 변화로 업무 필요성이 감소되는 운전분야(기능직) 정원을 감하고,
- 일반직 정원을 늘려 현안사업 추진 및 인력운용에 효율을 높이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(별표 3)
    - 일반직 정원 조정 : 454 → 457 (증 3)
    - 기능직 정원 조정 : 90 → 87 (감 3)
  - 조정내역
    - 기능직(감 3) : 운전원 2(9급 1, 10급 1), 조무1(10급)
    - 일반직(증 3) : 계약직 3
      - 총 무 과 : 라급 1명(기록물관리)
      - 문화체육과 : 라급 1명(학예사)
- ※학예사 :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한 전시회 개최, 작품수집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
- 도 시 과 : 다급 1명(재개발업무)

## 5. 관련법규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

## 6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홍성춘)

### 가. 본 조례안은

- 행정 환경 변화로 업무 필요성이 감소된 운전분야 등의 정원을 감하고, 현안사업 추진 및 인력운용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직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임.
- 이에대한 주요 개정안을 보면
  - 기능이 쇠퇴한 운전원 2명과 조무원 1명 등 모두 3명의 기능직 정원을 감하고,
  - 이를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- 이렇게 정원이 조정이 되면
  -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· 활용 · 이관 등을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과
  -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및 기념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예사 1명,
  - 주택재개발 업무를 담당할 전문요원 1명 등 계약직 전문요원 3명을 충원하려고 하는 것임.

### 나. 이와같이 이번 정원 조정안은

-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
-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행정 변화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

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